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사이버 경제범죄 실태에
관한 연구: 사이버 밀수를 중심으로**

A Study on Cyber Economic Crime in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With Focus on Cyber Smuggling

2006-15 | 책임연구보고서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사이버 경제범죄 실태에
관한 연구: 사이버 밀수를 중심으로**

A Study on Cyber Economic Crime in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With Focus on Cyber Smuggling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연구관 정웅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II.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불법위험	4
1. 전자상거래의 정의	4
2. 전자상거래의 추세	8
3. 전자상거래의 불법위험	11
III. 사이버 경제범죄의 실태	15
1. 사이버 경제범죄의 특징	15
2. 사이버 경제범죄의 개황	18
3. 무역부문에서의 사이버 경제범죄: 사이버 밀수	23
IV. 결론: 사이버 경제범죄의 대응전략	27
참고문헌	31

1. 서론

1. 연구의 목적

전자상거래는 컴퓨터와 IT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글로벌 마케팅이 가능한 새로운 시장으로서 경제활동과 국제무역의 패러다임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상거래는 21세기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할 새로운 무역라운드인 인터넷 라운드(internet round) 또는 사이버라운드(cyber round)라고 명명되어 소위 밀레니엄 라운드 이슈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개별 소비자와 정부는 물론, 기업에 새로운 사업성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산업구조 및 사회·문화 등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철저한 시장분석과 전략설정을 통하여 인터넷이 제공하는 새로운 무역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상거래가 보다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인증, 보안, 지불시스템 등 다양한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이신규, 2001). 이러한 기술적·제도적 문제점이 해결될 경우 전자상거래는 세계화, 정보화 및 지식집약화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의 상거래와 교역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EU,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은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국제무역의 패러다임 속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시스템 및 인력 확보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외 OECD, WTO, APEC 등의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WTO에서의 논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화 문제를 비롯하여 주로 통상문제에 집중되고 있으며, 다른 국제기구와는 달리 논의의 결과가 회원국들에게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국제무역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세계적 연결망을 지닌 인터넷과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 같은 각종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인 사이버무역(cyber trade)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이 제정됨으로써, 이러한 국제규범이 다자간 협상에서의 새로운 경쟁규칙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하여 여러 가지 제반 요건 및 기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통상규범이 제정될 경우 우리의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 사이버 무역시대에 기업과 정부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전자상거래의 규범제정 동향에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사이버 무역 제도화에 즈음하여 우리 정부에서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불법무역을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무역질서를 확보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전자상거래의 발전추세와 불법위험, 사이버 경제범죄의 실태를 살펴본 후에 결론에서 사이버 경제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전략을 간략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수반한 사이버 경제범죄의 실태 분석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전략의 모색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함축한 제도적 접근시각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신제도주의적 접근 시각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관련 법제도 및 통계자료분석을 통한 처방적(prescriptive), 정책지향적(policy-oriented) 방법이 원용된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사이버 경제범죄 전반의 특징과 현황을 분석하되 특히 무역부문에서의 사이버 경제범죄인 사이버 밀수범죄의 동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포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먼저

Ⅱ장에서 전자상거래의 발전 추세와 불법위험을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사이버 경제범죄의 실태로서 사이버 경제범죄의 특징과 개황, 사이버 밀수범죄의 동향을 분석해 본다. 이어 마지막 Ⅳ장에서는 사이버 경제범죄 대응의 기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II.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불법위험

1. 전자상거래의 정의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EC)라는 개념은 그 내포하는 의미가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2001년 국가정보화백서에서는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개념을 “넓은 의미의 전자상거래는 기업·정부·소비자 등 각 거래주체가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행하는 광고·발주·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등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을 통해 거래 당사자간에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협의의 개념이다. 전자상거래는 현재의 모습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새로운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을 형성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유재걸, 2003: 226-230).

1) 우리나라에서의 정의

전자상거래의 확대됨에 따라 전통적인 상거래의 규범으로는 전자거래를 규율하는데 한계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자거래에 대하여 전통적 상거래 행위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자상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을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34호로 제정하였다.¹⁾ 이후 전자거래기본법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나, 전자상거래의 확산 및 기술과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

1) 전자거래기본법 제1조.

는 바, 전자상거래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법적 논란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피해구제·분쟁해결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전자상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2년 1월 19일 전자거래기본법의 전문개정을 통해 법률 제6614호로 공포되었다. 이후 동법은 8차의 일부 개정과정을 거쳤다.²⁾

우리나라에서 현재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국내법으로는 전자거래기본법 외에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공업및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그리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정의된 전자거래의 의미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³⁾ 또한 2000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전자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처리되는 거래’라고 규정된 바 있다.⁴⁾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의미를 다양하게 혼용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특히 전자거래기본법의 제정 당시 ‘전자상거래’의 의미가 다소 한정적이라는 이유로 ‘전자거래’라는 단어를 선택한 정부도 이후 ‘전자거래’와 ‘전자상거래’를 혼용하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 정의하는 전자상거래의 의미도 “두개 이상의 기업 간의 사업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일련의 통합적인 전자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행위”, “EDI 등 전자적 수단을 토대로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방식에 따라 행해지는 거래”

2) 현재 전자거래기본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되어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5호.

4)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제2조 1호.

등 다양한 정의 사용하고 있다(법무부, 2001.1).

2)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의 정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아직까지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 전자상거래의 대하여 국제적으로 확실히 정의된 것은 없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전자상거래의 정의가 국가 및 연구주체에 따라 그리고 관심분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인 틀에는 큰 차이가 없다.

(1) EU에서의 전자상거래의 정의

유럽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인 ‘전자상거래 서론’에서 전자상거래의 의미를 ‘물리적인 교환 또는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에 의한 것보다는 당사자들이 전자적으로 상호 작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⁵⁾ 이는 데이터·음성·화상 등을 포함한 데이터의 전자적 처리와 전송을 기반으로, 기업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을 포함하는 것이다.

(2) 미국에서의 전자상거래의 정의

1997년 7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발표한 세계전자상거래기본구상⁶⁾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의 실제적인 형태를 서술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기술은 서비스 거래에 있어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제품(영화, 비디오, 게임, 녹음), 정보 서비스(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신문), 기술 정보, 금융 및 전문 서비스(비즈니스와 기술적 자문, 건축상의 디자인, 법률서비스 등을 포함한다.)를 포함하고 있는 세계 무역은 과거의 10년 간 빠르게 성장했다. 인터넷은 소비자와 직접적인 마케팅에 일종의 혁명을 일으

5) <http://www.ispo.cec.be/ecommerce/answers/introduction.html>

6) <http://www.w3.org/TR/NOTE-framework-970706.html>

켰다. 소비자는 제조업자와 판매자에게서 여러 가지의 전 세계의 상품을 홈 쇼핑을 통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들은 컴퓨터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제품을 보고, 그 제품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여 제품에 대한 선택과 그 값을 치를 것이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인터넷 또는 웹(Web)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영업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⁷⁾ 이는 ‘인프라의 지원, e-비즈니스 절차 및 전자상거래를 언급하면서, 전자상거래를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유권 또는 권리의 이전을 포함하는 컴퓨터를 매개로 한 네트워크 상에서 완료되는 거래’로 정의되는 미 상무부 산하의 통계국에서의 정의⁸⁾가 그 의미를 보완하고 있다.

(3) OECD에서의 전자상거래의 정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활발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국제 기구는 OECD이다. OECD에서 전자상거래는 ‘문자, 소리, 시각 이미지를 포함하여 디지털화된 정보의 전송, 처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상업적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⁹⁾ 특히 2000년 4월 27일에 OECD 산하 정보화경제작업반(Working Party for International Economy; WPIE)과 정보화사회지표작업반(Working Party for Indicators for Information Society; WPIIS)의 합동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광의와 협의의 정의를 합의하여 도출하였는데 여기에서 정의한 전자상거래의 광의의 의미는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기타 영리 및 비영리 기관간에 컴퓨터 네트워크(computer mediated network)를 통해 수행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및 주문’으로, 협의의 의미는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기타 영리 및 비영리 기관간에 인터넷 프로토콜에 기반한 네트워크(internet protocol

7) U.S Department of Commerce(1999), *The Emerging Digital Economy II*.

8) <http://www.census.gov/epcd/www/ebusines.htm#e-business>

9) http://www.oecd.org/publications/pol_brief/1997/9701_POL.HTML

based network)를 통해 수행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및 주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4) WTO에서 전자상거래 정의

1998년 WTO 일반이사회에서 미국이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를 위한 성문법전화를 제안하면서 시작된 WTO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세계전자상거래에 관한 제네바 각료선언 이후 '전자상거래에 관한 WTO 작업계획 수립'으로 이어졌다. 이후 WTO의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에서의 논의 가운데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것은 전자적 전송물(electronic transmission)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즉, 이를 서비스(services)로 볼 것인지, 상품(goods)으로 볼 것인지, 제3의 유형(something else)으로 볼 것인지를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WTO 작업계획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상품의 판매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생산과 유통까지를 전자상거래의 범주에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전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¹⁰⁾ 이외에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논의는 서비스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Service), 지적재산권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서도 논의되었으나, 각국의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고, 특히 지적재산권무역이사회에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서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기로 한 바 있다.

2. 전자상거래의 추세

1)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현황

세계경제는 전자상거래중심의 패러다임으로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10) WTO(1998), WT/GC/W/78.

현실적으로 전자상거래의 시장현황과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전자상거래 시장의 정의에 대하여도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발표된 시장 현황과 규모도 각기 다른 기준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고, 2000년 이후에는 세계의 전자상거래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세계전자상거래 시장규모의 추정은 각각의 조사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며, 그 수치는 <표 2-1>과 같다. 여기에서 주의 할 것은 가트너그룹의 예측치와 다른 기관과의 예측치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산업경쟁력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전자상거래에 대한 비지속적인 통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공우, 2003: 203-205). 한편, 세계전자상거래 시장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관세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해외로부터 직접구매하는 B2C전자상거래 규모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1>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단위: 억\$)

조사기관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가트너그룹	1,450	4,030	9,350	21,800	39,500	73,000
eMarketer	984	1,972	3,810	7,020	12,440	
포레스터리서치					13,000	27,000
IDC	1,100	2,180	3,000	7,340	13,170	

자료: 산업자원부(2001), 『세계전자상거래동향』, 2001-10.

2)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국내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2002년 전자상거래 업체수는 755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급증세는 산업자원부, 전자

거래진흥원 등의 전자상거래 관련 유관기관의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기관에 의한 국내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예측은 <표 2-2>와 같으며, 통계청발표의 시장규모는 <표 2-3>과 같다. 그러나 시장예측기관의 예측치와 통계청의 발표수치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결과라 하겠다.

<표 2-2>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예측

(단위: 억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비고
앤더슨컨설팅	800	2,700	6,500	14,000	26,800	
LG경제연구원	980	2,160	4,950	9,210	17,150	

자료: 전자거래진흥원(<http://www.keb.or.kr>).

<표 2-3>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구 분	총거래규모(A)	전자상거래규모(B)	전자상거래율(B/A)
2000년	1,270조	57조 5,584억	4.5%
2001년	1,308조	118조 980억	9.0%

자료: 통계청

3) 국내 전자상거래 형태별 시장규모

앤더슨 컨설팅 조사기관에 의하면 국내의 전자상거래 형태별 시장규모는 2005년까지 연평균 성장율이 B to B는 110%, B to C는 66%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자세한 수치는 <표 2-4>과 같다.

또한 형태별 전자상거래시장 규모에서도 통계청발표의 수치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1년도 전자상거래 거래주체별 실적을 보면

다음의 <표 2-5>와 같다.

<표 2-4> 국내 전자상거래 형태별 시장 규모 예측

(단위: 억원)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B-to-B	400	1,800	4,800	11,000	22,000	42,000	71,000
B-to-C	400	900	1,700	3,000	4,800	7,500	11,000

자료: 엔더슨컨설팅, 1999.

<표 2-5> 2001 거래주체별 전자상거래 금액

(단위: 억원)

구분	2001년				합계	구성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전자상거래 총규모	242,630	266,450	38,660	362,060	1,189,800	100
B2B*	227,350	242,420	296,580	32,310	1,089,460	91.6
B2G	9,000	17,050	14,470	29,850	70,370	5.9
B2C	5,250	5,880	6,560	8,110	25,800	2.2
기타	1,030	1,100	1,050	990	4,170	0.4

자료: 통계청

참고: B2B 연간거래액은 전자상거래 기업통계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108조 5,950억원, 사이버쇼핑몰 조사에서 나타난 B2B부문액 3,510억원을 합산한 것.

3. 전자상거래의 불법위험

전자상거래 기업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위험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장애, 내·외부자의 공격의 위험 등 매우 다양하며 그 중에서도 불법행위에 따른 불법위험이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주요 요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전자상거래는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도처에 있는 네티즌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외부와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뜻하지 않는 책

임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은 특정 정보가 그 정보에 대하여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의 컴퓨터에 대량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특정 정보가 실행 프로그램의 형태로 전달되는 경우에 수신상대방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바이러스의 전염수단을 제공하기도 한다. 지적재산권의 침해나 바이러스의 유포가 컴퓨터 소유자 또는 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나 태만의 개입으로 초래된 경우 형사처벌이나 벌금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가상공간(cyber)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의한 주요 위험들의 범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라공우, 2003: 205-208).

(1) 저작권 위반(copyright violation)

인터넷으로 발행된 자료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위험을 사용자에게 노출시키고 있다. 만약에 의도적이든 아니든간에 인터넷 상에서 일어난다면 많은 잠재적 사용자와 불법적인 저작권 위반을 포함하는 자료를 불법으로 유포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의 잠재성은 매우 증가한다.

(2) 명예훼손 또는 불법적 선전행위(Defamation or Publicity Torts)

명예훼손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르고, 인터넷 상에서 발행된 자료는 다른 이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며 또는 그 사람을 잘못된 시선으로 비치게 할 수 있다. 만약 그럴 경우 발행인은 명예훼손 혐의 또는 관련 불법행위로 소송을 당할지도 모른다. 인터넷 상의 잠재적인 사용자가 매우 거대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명예훼손 자료의 발행으로 생길 수 있는 가능한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3)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Copyright and Trademark Infringement)

컴퓨터와 관련 커뮤니케이션 기술에서의 계속되는 발전은 사업과 법적 문제 양쪽 모두에서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는 단지 자사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다른 이의 지적 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의 침해는 거의 공통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또는 판매를 위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 때에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한 회사가 상표권, 저작권 또는 다른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면, 그 회사가 잠재적인 소비자와의 의사소통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적 배상책임 위험 가능성 모두 커질 것이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적, 민사적 형벌을 초래할 수 있다.

(4) 도메인 이름 강탈(Domain name Hijacking)

기업과 개인들은 전통적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앞서서 유명한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 상표 소유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지불을 요구했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당사자들은 지적 재산권 침해에 공조한 것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ppeals for the Circuit의 미국 법원은 NSI는 법적으로 중요한 도메인 이름을 제공자가 등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최근 판결하였다.

도메인 이름에서 상표의 사용은 또한 소송을 야기 시켰다. 법원은 URL (Uniform Resource Locator)의 도메인 이름 범위내에서 상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위반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어떤 법원은 최근 뒤따르는 URL이 다른 기능을 제공하는 텍스트내에서의 상표(Trade mark)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종종 URL의 통로로 언급되는 이 부가적인 텍스트는 단지 웹사이트의 데이터가 호스트 컴퓨터 파일내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5) 개인정보보호의무위반 위험

인터넷을 통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악의적인 의도나 소홀이 아니더라도

도 단순히 홈페이지 개발의 하자(errors)로 인해서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미국에서 인터넷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는 Amazon이다.¹¹⁾ Amazon은 미국 워싱턴 주법과 연방정부의 컴퓨터 사기 및 오용 법률, 그리고 연방정부의 전자통신 프라이버시 법률에 근거하여 2000년도에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mazon의 인터넷 자회사인 Alexa는 웹 상에서 거래패턴을 감시하는 프로그램(zBubbles)을 개발하였는데 이를 통해 Amazon 서점 고객의 동의 없이 성명 및 주소 등 개인의 사적 정보를 내포한 완전한 웹주소(URLs)을 수집하여 저장하고 이러한 비밀 정보를 공유하였다는 것이 피소이 내용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신용카드의 위조 또는 불법발급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습득한 주민등록증으로 각종 사이트에 가입함으로써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고객들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11) Mark Greisiger(2001), "Securing Privacy", *Risk Management*. Vol. 48(October 2001).

Ⅲ. 사이버 경제범죄의 실태

1. 사이버 경제범죄의 특징

사이버 경제범죄의 특징은 통상의 사이버 범죄의 특성으로 제시되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이버 범죄의 특징으로 지적되는 것으로는 비대면성, 익명성,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 내지 국제성, 높은 전파성 등을 들 수 있다(원혜욱, 2004: 8-11).

1) 비대면성

사이버공간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는 생활 공간으로서 불가시적이므로 현실세계와는 달리 행위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행동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곳에서의 모든 범죄행위도 행위자가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여진다. 사이버범죄의 이러한 비대면성으로 인하여 범죄자들은 보다 과격하고 대담하게 행동하게 되어,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인터넷 사기에 있어서 많은 경우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 데서 오는 책임의식의 결여와 범행 후 도주가 용이하기 때문에 쉽게 범죄로 연결된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협박과 같은 경우에도 얼굴을 맞대면 쉽게 할 수 없는 언행을 비대면성으로 인해 과격해지고 대담하게 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대체적으로 네티즌들은 너무나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직선적이다. 나아가 사이버공간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받아들이며 전파하고 동조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으며, 피해자는 행위자를 거의 알 수 없어 범인파악이 어렵게 되고 피해의식이나 공포감이 훨씬 커지게 된다. 반면 범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기계에 대한 오용이라는 인식만 가지고 있을 뿐 자신이 타인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이 결여되기 쉽다. 특히 컴퓨터가 지적인 게임이나 유희의 요소를 가짐에 따라 범죄와 무관한 게임이나 단순한 유희의 동기에서 범죄가 자행되고 있어서 현실공간에서 행해지는 범죄에 비하여 죄의식이 약하다.

2) 익명성

사이버공간은 인터넷주소를 중심으로 서로 접속하고 필요한 거래를 행하게 된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나 원격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일부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검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ID를 도용하는 경우에도 각 네트워크의 인증시스템에서는 구별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용자로 인정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 때문에 많은 범죄가 발생한다. 범죄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킹, 바이러스유포, 통신사기, 음란물판매 등의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ID 등의 허위포시가 가능하다는 점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음란한 자료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사기나 명예훼손·업무방해행위를 행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은 범죄자를 찾아내야 하는 수사절차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익명성과 관련하여서는 사이버범죄를 행하는 장소에서도 그 특이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PC방에서 이루어지는 범죄가 전체 사이버범죄 중 약 60~70%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범죄자들이 자신의 접속 위치를 추적당하지 않으려는 생각에서 익명성이 쉽게 보장되고 언제든지 자리를 떠날 수 있는 PC방을 자주 이용하고 있으며, 주로 온라인게임 아이템 해킹 및 사기(전체 범죄발생의 45.7%), 음란물 불법복제물 판매, 명예훼손, 사이버성폭력 행위

등이 PC방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경찰청, 2002).

3) 시간과 공간의 무제약성

사이버공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크게 벗어난다.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24시간 가능하며 원격접속이 가능해 지구 반대편에서도 실시간으로 같은 공간에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원격화상회의도 가능하다. 범죄자들에게도 하루 24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범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이버공간의 이러한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은 사이버범죄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즉 범죄자는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컴퓨터에도 바이러스를 유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킹도 할 수 있다. 국외 공격자의 경우 국내시스템에 침입하여 홈페이지 변조, 시스템 파괴, 중요정보 유출 등 시스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국내시스템을 타기관 침입을 위한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시스템관리자가 권한을 도용한 상태이므로 언제든지 시스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4) 정보전달의 용이성과 높은 전파성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전달의 용이성은 최근에 사이버공간을 ‘제3의 여론 형성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도 한다. 실제로 정부의 각 부처에서 사이버여론을 정책결정과정에서 반영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정보전달의 용이성이 사이버공간을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유통, 유언비어 유포의 근원지로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의 특성은 인권이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정보 침해가 주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대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개인도 쉽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행해지는 행위의 속도는 전파의 속도 내지 빛의 속도에 필적한다. 이러한 실시간의 행위를 24시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단순한 한번의 '클릭'만으로도 범죄를 쉽게 행할 수 있게 한다. 이와 더불어 오늘날 보편화된 이-메일에 의한 송수신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전달의 용이성과 빠른 전파성은 사이버범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즉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적 표현이나 음란물 또는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전세계에 널리 유포될 수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맬리사바이러스, CIH바이러스, 러브바이러스 등의 컴퓨터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전세계로 전파되어 수백만대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를 날려버리거나 시스템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여 막대한 손해를 끼친바 있다. 바이러스는 물론 해킹에 의한 시스템의 작동불능은 경우에 따라서는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의 작동을 멈추게 함으로써 업무 전반을 마비시키기도 한다.

2. 사이버 경제범죄의 개황

1) 인터넷 사기

사이버 경제범죄에서 대표적인 것은 인터넷을 통한 사기라고 할 수 있다. 웹사이트, 전자메일, 뉴스그룹, 전자게시판과 같은 통신 수단을 갖춘 인터넷의 출현은 오늘날 재화와 서비스가 사이버공간에서 거래되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게 하였으며 그 거래규모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형적인 전자상거래 유형인 재화나 용역을 구하는 단계를 지나서 사이버증권, 사이버경매까지 이루어지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접촉기회 증대, 직거래에 의한 유통비용절감과 가격하락 등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비대면거래가 가능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시

장의 범위가 전세계로 확대되는 점을 악용하여 구매자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거래가 새로운 범죄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국제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범죄자들을 추적·처벌할 수 있는 법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완비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더욱 증가하고 있다(원혜옥, 2004: 31-33).

사이버공간에서의 사기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기의 한 유형으로서 기존의 사기가 인터넷 또는 PC 통신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융합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고발된 2000년도의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사기는 1,803건으로 1999년의 306건에 비해 무려 489%가 증가하였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사기유형을 살펴보면, 홈뱅킹사기, 상품대금 사기, 인터넷 공모 사기, 피라미드 사기 등 여러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범죄유형에서 나아가 타인의 이-메일에 바이러스를 첨부하여 전송한 후 이를 실행한 피해자의 컴퓨터 사용 내역이 범인의 이-메일로 자동적으로 전송되는 것을 이용하는 기술적 요소가 결합된 형태까지 발견이 되고 있다. 특히 은행전산망만으로는 위조된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허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용카드 10장을 발급받은 뒤 이를 통하여 5억원의 현금을 인출하는 사건과 컴퓨터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가상 인물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현금을 인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전자상거래의 사용자 인증의 모순을 이용한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전국소비자연맹(National Consumer League : NCL)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은 온라인경매 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NCL에 따르면 온라인경매가 사이버공간에서의 사기행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 68%, 1999년 87%로서 가장 높다. 두 번째로 빈번한 사기행위는 재화나 서비스거래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판매 광고를 통해 대금을 받은 후 이에 해당하는 물건을 배달하지 않거나 불량제품을 우송하는 행위이다. 세 번째로는 투자관련사기 또는 사업 기회 제공을 빙자한 것으로서 투자위험이 없고 고소득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이다. 네 번째 유형으로 인터넷을 통해 재택근무하는 자를 채용한다거나 부업기회를 제공한다고 선전해 돈을 챙기고 채용이나 부업기회 제공 약속을 지키지 않는 형태이다. 다섯 번째로는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피라미드나 다단계판매를 이용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도 피라미드나 다단계판매행위에 인터넷이 새로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이 금전적 이윤을 추구하기에 매우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되면서, 사용자와 잠재적 피해자의 범위가 광범위하면서, 그 숫자도 제한 없이 증가하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접촉이 용이하며, 저렴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국경을 초월하여 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사기행위는 특히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간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제성 사이버범죄의 성격을 띤 사기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사기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도 국제수사공조가 요구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에 대해 경제적 침해를 야기하는 인터넷사기를 포함한 사기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검찰(Europäischer Staatsanwaltschaft)의 창설이 논의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최근 개황

2004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는 약 3,15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0.2%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95.3%, 30대가 88.1%를 차지하는 등 향후 경제활동을 이끌어갈 연령층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10대 이하의 인터넷 이용률이 96.2%를 차지하는 등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률은 100%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에 산재한 PC방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얼마든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 공공도서관, 커피숍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무선인터넷을 기반으로 유비쿼터스 홈네트워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우리나라는 진정한 네트워크 강국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인터넷이 전 국민에게 보편화되면서 사이버범죄도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2004년 한해 동안 총 77,099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하였다(2001년 대비 132% 증가). 인터넷을 이용한 게임산업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게임 아이템과 관련된 피해가 35,162건 발생하여 전체 사이버범죄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고, 해킹·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는 15,390건 발생하였다. 특히 PC방 문화가 발달하면서 PC방을 이용한 범죄가 36,148건으로 전체 사이버범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표3-1> 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검거 현황

(단위: 건, 명)

구 분	계	사이버테러형 범죄			
		소 계	해 킹	바이러스	
발 생	2004년	77, 099	15, 390	15, 348	42
	2003년	68, 445	14, 241	14, 159	82
검 거	2004년 (82.2%)	63, 384	10, 993	10, 955	38
	2003년 (75.6%)	51, 722	8, 891	8, 844	47

일반사이버 범죄						
소 계	통신사기 게임사기	명예훼손 성폭력등	개인정보 침해	불법사이트 운영	불법복제 판매	기 타
61, 709	40, 283	3, 667	3, 137	2, 308	1, 064	11, 250
54, 204	37, 453	3, 068	2, 863	1, 821	664	8, 335
52, 391	30, 288	3, 751	2, 065	2, 410	1, 244	12, 633
42, 831	26, 875	2, 976	2, 015	1, 719	677	8, 569

자료: 경찰청(2005), 『경찰백서』.

이러한 추세에 따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집중수사 실시, 주요 해킹사범 검거, 사이버 수사 전문성 강화, 첨단 사이버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민간·국제협력 강화 등 사이버 치안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다.

먼저 주요 사이버범죄 사건 수사를 보면 사이버 사기와 관련된 범죄를 지적할 수 있다. 사이버범죄와 관련하여 현재 전세계적인 화두는 단연 피싱(Phishing)이라는 범죄수법이다. 2005년 실제 국내에서도 이러한 수법을 통해 유명 국내은행 H社의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모방한 피싱사이트를 개설하고 이에 접속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거금을 이체해 간 피의자들을 끈질긴 추적을 통해 검거한 바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의 허점을 악용한 해킹 기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대출사기 사건 등 금융거래의 상당 부분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점에 착안한 신종 금융범죄를 해결, 언론·방송 등을 통해 경찰의 사이버 수사력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그밖에 경찰은 온라인게임의 아이템을 불법적으로 생산하여 1,000억원 상당을 판매하고 중국으로 빼돌린 피의자들을 검거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시키기도 하였고, 도박·음란사이트 단속, 인터넷상 개인정보 유출 등 주요 사이버범죄를 해결, 사이버공간의 치안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다음으로 주제별 집중수사가 실시된 내용을 보면 전자상거래사기, 불법음란스팸메일, 사이버폭력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 전국 또는 지방청 단위 집중수사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전자상거래 사기사범 등 8,611건 14,440명을 단속하여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범죄의 제압 및 국민생활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표 3-2> 사이버 범죄 집중수사 활동(2005년)

(단위 : 건, 명)

주 제	기 간	검거건수	검거인원	실 적	
				구 속	불구속
설전후 전자상거래 사기 집중단속	1. 20~2. 18 (30일간)	973	1,082	71	1,011
불법음란스팸메일 집중단속	3. 22~4.15 (25일간)	166	631	30	601
사이버폭력 일제단속	4. 18~12. 31 (258일간)	4,438	7,907	571	7,336
지방청단위 주제별 사이버범죄 일제단속	7. 1~8. 31 (62일간)	1,070	2,379	81	2,298
전자상거래 사기 집중단속	9. 1~10. 31 (61일간)	1,250	1,528	117	1,411
인터넷상 음란물 유포행위 집중단속	11. 24~1. 31 (69일간)	714	913	25	888

자료: 경찰청(2006), 『경찰백서』.

3. 무역부문에서의 사이버 경제범죄: 사이버 밀수

인터넷 상거래의 확산으로 국제무역에서 사이버 밀수가 증가하고 또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다. 사이버 밀수란 세관에 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거나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불법통관한 외국물품을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경매, 이메일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명화, 2005). 사이버 밀수는 주로 해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구매자가 물건을 구입하면 이를 국제우편이나 특송 업체를 통해 배송해 주거나, 국내에서 쇼핑몰을 개설하고 외국인 대리인이 물건을 대신 배송해 주는 형태로 이뤄진다.

2005년 1-3월까지 적발한 사이버 밀수품은 71억원으로 지난 2001년 2억원보다 약 35배 늘었다. 서울세관을 통해 적발한 사이버 밀수는 2002년 21억원, 2003년 37억원에 이어 지난 한 해 동안 58건, 74억원 규모가 적발됐다. 이중 상표권 침해 사례인 일명 ‘짜퉁’ 상품 판매는 전체 사이버 밀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매년 더욱 확대되고 있다<표 3-3>.

<표 3-3> 사이버밀수 단속 현황

(단위: 백만원)

년 도	2001	2002	2003	2004	2005.3
사이버밀수	214	2,161	3,716	7,447	7,100
상표권침해	101 (47)	105 (5)	1,015 (27)	6,295 (85)	2,707 (81)

주: 서울세관본부 발표 기준, ()는 사이버 밀수에서 상표권침해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아이뉴스24』, 2005. 6. 12.

사이버 밀수는 인터넷이 급속히 확산되는 지난 2001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 사이버 밀수가 이처럼 확산되면서 서울세관 사이버밀수 단속센터(Customs Cyber Smuggling Center)도 이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사이버밀수단속센터는 2천500여개 대상 사이트 중

에서 230여개를 우범 사이트로 지정하고 53개 사이트에 대해 집중 조사를 펼치고 있다. 조사 대상 사이트는 주로 외국 물품을 해외에서 우체국이나 공항으로 직배송해 주는 사이트나 외국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짜를 판매하는 사이트다. 가짜 비아그라 등 의약품이나 엑스터시, 필로폰 등 마약류 판매 사이트도 단속 대상이다. 센터에서는 물품 가격을 면세가격(한화 15만원 이하) 미만으로 만들어 분할배송 한다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통관안내를 게재하지 않거나 결제계좌를 공개하지 않고 나중에 통보하거나, 수입 금지품 용어를 사용하는지를 검색대상으로 삼는다. 경매 사이트를 통한 가짜 상표 물품 판매도 주요 감시 대상이다. 이밖에 직거래나 신용카드 사기, 개인정보 도용 등도 경매 사이트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로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유형은 Paul Trimmer의 유형 분류에 의할 때 여러 가지가 있으나 최근 전자상거래에 자주 이용되는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경매, 이메일을 이용한 판매 등으로도 범주화될 수 있다(이명화, 2003: 26).

첫째, 가장 기본적인 전자상거래 모델로 기업홍보에서 점차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대금지불이 가능하며 쇼핑몰사이트로 알려진 인터넷 쇼핑몰(E-shop)이 있다. 둘째, 경매입찰 기능에서 계약, 대금결제, 배달 기능을 포함하는 전자경매(E-auction), 셋째, 인터넷e-shop을 한곳에 모아 놓은 형태로 저명한 브랜드 아래 품질보증과 대금지불을 보증하는 기능을 가진 이메일판매(E-mail)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 유형을 통한 전자상거래 밀수는 쇼핑몰사이트를 통해서 고가의 유명 상표의 사치품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관세도 내지 않고 구입할 수 있다거나 10만원 이하의 소액물품으로 위장하여 면세로 통관시켜주겠다는 등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게재하면서 소비자를 유혹하고 세관통관에서는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1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한 소액면세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 주요 거래 품목은 명품 의류·시계·잡화(구두·핸드백 등), 유아용품(인형 등), 화장품, PC 등 전자기기 등으로 해외 유명 상표들로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품목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유형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밀수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미국, 일본 등 해외에 거주하는 유학생, 주재원 가족, 교포 등 개인이 사이트를 직접 개설하여 아웃렛 또는 해외 경매사이트 알선 등으로 구입한 물품을 해외에서 선물 등으로 허위신고하여 국내로 직접 배송하는 유형, 둘째, 국내에서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해외에서 선물 등으로 국내에 물품을 직접 공급하는 유형으로 주로 해외쇼핑 대행업체 등이 국내에서 통관 등을 대행한다. 셋째, 국내에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에서 물품을 택배로 직접 공급하는 유형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외국의 유명 제품인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한 다음 공항만 등을 통하여 직접 휴대·밀반입한 밀수품을 배송하거나 국내 시장에서 구입한 보따리상들이 휴대·밀반입한 밀수품, 국내산 가짜 등을 유통시키고 있다.

거래유형별 밀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사이트를 개설하여 해외에서 직접 배송하는 경우는 해외 또는 국내 인터넷경매사이트에서 낙찰받은 물품을 국제우편소포로 국내에 배송하면서 품명과 가격을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실제가격보다 아주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부정감면받거나 포탈한다. 둘째, 국내에서 사이트를 개설하고 해외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유형은 일본·홍콩 등의 해외 사이트와 구매 및 판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하여 해외사업자와 지불조건, 물품주문, 대금회수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유명상표의 물품을 요건 또는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안내하거나, 면세범위 내에서 허위영수증을 발급하여 관세 등을 부정감면받도록 한다. 셋째, 국내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유형은 휴대반입한 밀수입품, 국내산 가짜, 국내에 대량으로 반입된 가짜 유명상표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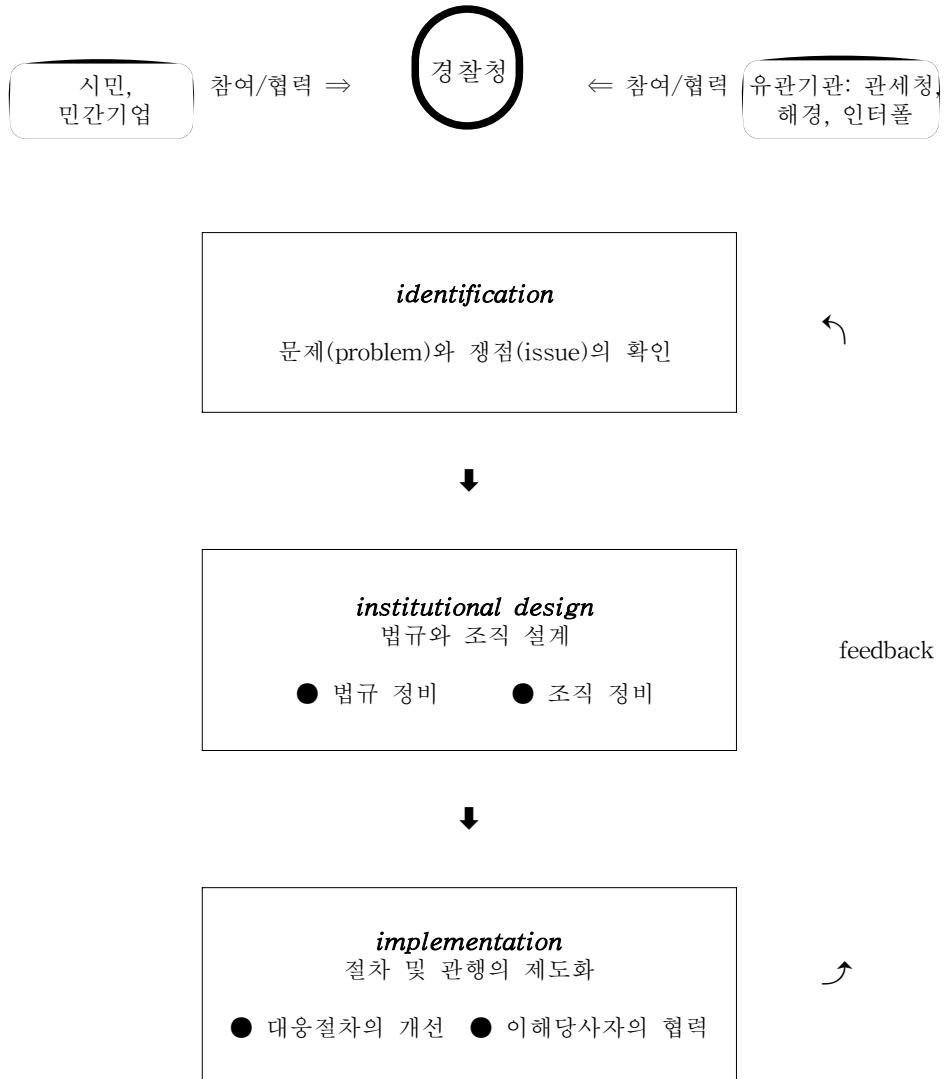
IV. 결론: 사이버 경제범죄의 대응전략

본 연구는 서론에서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수반한 사이버 경제범죄의 실태 분석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전략의 모색을 신제도주의에 기초하여 접근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필자는 불법무역을 다룬 선행 연구에서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 모델(IMCRS: Institutionalization Model of Crime Response System)을 구축하였는 바, 이 모델은 사이버 경제범죄의 대응전략의 구상에도 원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그림 4-1>에 나타난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 모델을 재론하면,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 과정은 국제교역에서 불법무역범죄 등 문제의 발생과 쟁점의 확인(identification), 법규와 조직 등의 제도를 마련하는 제도 설계(institutional design), 범죄대응을 위한 절차 및 관행을 제도화하는 집행(implementation), 그리고 환류(feedback)에 의한 순환과정으로 이루어진다.¹²⁾

범죄대응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주체는 우리 경찰청 및 유관기관, 민간기업, 시민 등으로 볼 수 있다. 범죄대응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데 있어서는 경찰청이 중심적인 행위자가 되며, 범죄대응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이중에서 특히 심각한 쟁점으로 발전하는 것들은 공식적 법규 정비와 조직 개편, 범죄대응절차 개선 등을 통해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 역시 범죄대응의 주요 행위자이며 이해당사자인 바, 이들 유관기관도 범죄대응 제도화 노력에 참여하고 협력한다. 민간기업과 시민은 불법무역 범죄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바, 범죄예방 및 법제도상 문제점의 제기 등을 통해 범죄대응 제도화에 적극적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12) 정웅, 『FTA 시대 불법무역과 제도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범죄를 중심으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6.

<그림 4-1>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 모델



본 연구는 IMCRS에 따른 사이버 경제범죄 대응전략의 내용으로 제도 설계 단계 특히 조직화 측면에서 전문수사부서 확보, 제도 집행 단계에서 감시단속시스템의 고도화, 이해당사자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사이버 경제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사기관이 전문화되어야 한다. 이는 경제지식 뿐만 아니라 현대 정보기술을 숙지할 수 있는 전문가만이 급속히 발전해나가고 있는 사이버 경제범죄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이버 밀수와 같은 국제성 사이버범죄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전문화가 기술적인 영역 이외에도 언어 및 문화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속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단기적 작업으로는 전자상거래 조사 업무 매뉴얼화가 요구된다. 즉 거래유형별 과세가격, 납세의무자, 과세물건확정시기, 적용법령 등 조사과정에 필요한 일반적인 원칙, 구체적인 내용, 다양한 수사기법 등이 담긴 업무 매뉴얼 개발로 전자상거래 조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감시단속시스템의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한된 조직과 인력으로 사이버 경제범죄에 대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형업체, 시장점유율 상위 업체군을 중심으로 한 조사체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위험관리기법(risk management)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거래 품목과 업체를 고위험(high risk) 및 저위험(low risk) 분야로 구분하여 이 중 우범성이 높은 품목이나 우범업체들을 대상으로 선별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이해당사자간 협력체계의 구축을 들 수 있다.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를 지향하며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이해당사자간 강력한 동반자관계(partnership)의 형성에 의한 상호 협력(collaboration)과 네트워크(network)의 구축인 것이다. 따라서 경찰청은 먼저 사이버 경제범죄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 차원에서 관세청,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총

팔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보호과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관기관 담당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물품의 정보교환 회의, 우범사이트 동태파악 등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업체와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관련업계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Informed Compliance)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자칫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여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해외쇼핑몰 관련업체, 또는 소비자 등 모든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범업체, 모범사례 등 발굴하고, 해외쇼핑대행업체, 특송화물업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업계의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대한 입법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경찰청(2002-2006), 『경찰백서』, 각년도.
- 라공우(2003), 「전자상거래의 피해와 관련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4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 박기륜(2004), 『국제범죄론』, 비전캐릭터.
- 법무부(2001.1), 『뉴라운드와 전자상거래』.
- 이명화(2003), 「전자무역시대의 사이버밀수 단속방안」, 『관세와 무역』 2003년 9월호, 한국관세무역연구원.
- _____ (2005. 11), 「사이버밀수단의 현황과 방향」, 『관세제도의 선진화와 무역환경변화의 대응(2005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관세학회.
- 이신규(2001), 「사이버무역을 위한 전자상거래의 국제통상문제와 대응방안」, 『관세학회지』 제2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 원혜욱(2004), 「국제성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역량강화방안 연구」,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유재결(2003), 「전자상거래의 과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4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 정 응(2005), 「남북교역의 법적 환경과 원산지표시 위반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19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_____ (2006), 「FTA 시대 불법무역과 제도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범죄를 중심으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_____ (2006), 「자본자유화에 따른 외환범죄의 양상과 대책: 동북아 금융허브의 안착을 위하여」,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Greisiger, Mark(2001), "Securing Privacy", *Risk Management*, Vol. 48.
- U.S Department of Commerce(1999), *The Emerging Digital Economy II*.
- WTO(1999), WT/GC/W/306.
- _____ (1998), WT/GC/W/78.

<http://www.police.go.kr>(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법제처 홈페이지)

책임연구보고서 2006-15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사이버 경제범죄 실태에 관한 연구: 사이버 밀수를 중심으로

2006년 12월 발행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1길 29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